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 시설 이용 지침

제정 2014.10.

개정 2015.07.

개정 2016.06.

개정 2019.01.

개정 2020.04.

개정 2023.03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'경기 콘텐츠코리아 랩' (이하 '경기콘랩' 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창작시설 이용에 필요한 대상, 조건, 시간,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창작시설) 경기콘랩 창작시설 및 각 시설별 부속물품은 다음과 같다.

- 1. 영상촬영스튜디오(S1): Sony Nex-FS700RH(카메라), Cannon 5D Mark 3(카메라), Sony A7M3(카메라), UWP-V1(무선마이크), 전동 크로마키 스크린, 영상 송출용 컴퓨터/TV, 부조정실 등
- 2. 녹음실(S2): MacBook Pro 15, M-Track 8X4M(오디오 인터페이스), RODE NT2-A(콘덴서 마이크) 등
- 3. 영상편집실1(S3) : T3610 Workstation 등
- 4. 영상편집실2(S4): T3610 Workstation, Mac Pro 6Core 등
- 5. 사진촬영스튜디오(S5): Fomex Ex600U(조명), H1000(조명), CP400(조명), LT60(라이트텐트), 누끼보드판 등

제3조(이용대상)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 대상은 경기콘랩 회원으로 한다.

제4조(이용시간)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- 1. 영상촬영스튜디오(S1), 녹음실(S2), 영상편집실1(S3), 영상편집실2(S4), 사진촬영스튜디오(S5)의 이용시간은 평일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로 한다.
- 2. 경기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신청)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영상촬영스튜디오(S1), 녹음실(S2), 영상편집실1(S3), 영상편집실2(S4),

사진촬영스튜디오(S5)는 경기콘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.

2. 경기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신청 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준수)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경기콘랩의 창작시설이용은 제3조(이용대상)에 따른다.
- 2. 창작시설 내 부속/렌탈물품은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.
- 3. 창작시설은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,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보유장비 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4.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랩의 시설, 기기, 장비, 비품, 기타 집기 등이 파손, 훼손, 유실되거나 분식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」 제25조(시설 및 물품의 훼손, 망실 등 변상)에 따른다.

제7조(이용수칙)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다.

- 1. 창작 장비 중 영상촬영스튜디오(S1), 녹음실(S2), 영상편집실1(S3), 영상편집실2(S4), 사진촬영스튜디오(S5)을 출입할 때는 운영자가 확인해야 한다.
- 2.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다.
- 3.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.
- 4.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.
- 5.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경기콘랩이 허용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.
- 6. 작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.
- 7.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운영자에게 알린다.
- 8. 이용 시 필요한 소모품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.
- 9. 창작시설 내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지 않는다.
- 10. 창작시설 이용이 끝난 후에는 이용장비 및 공간을 초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용제한) 경기콘랩 창작시설은 각 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- 1.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」 제5조(출입제한), 제6조(행위의 제한)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
- 2. 경기콘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.

제9조(손실에 대한 책임) 경기콘랩 창작시설/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,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경기콘랩과 이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.
- 2.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, 이용자가 동일한 모델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자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해야 한다.
- 3.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해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, 합의하여야 한다.
- 4.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, 경기콘랩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